

의안번호	2215192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6.4.16.
추계번호	25B6901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200만원, 2031년 5억 3,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2억 1,100만원(연평균 4억 4,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72	—	—	—	—	72	14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535	535	535	535	2,139	428
추가재정소요	72	535	535	535	535	2,211	442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하는 사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일하는 사람의 근로와 권익에 관한 조사·연구·상담·교육에 관한 사항 3. 일하는 사람의 복지와 공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하는 사람의 지원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하는 사람의 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원계획에 근거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3항) 1.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 내 일하는 사람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6조(노동권익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제2항) 1.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에 따른 일하는 사람 지원에 관한 사업 2.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3.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일하는 사람의 근로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5.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 재해 예방 사업 6. 일하는 사람 지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5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 추계(제1항 및 제2항)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미대상(제3항)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므로,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	• 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4	안 제6조(노동권익센터의 설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권익센터 설치 여부·규모·구성과 이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5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 미대상 –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므로,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 제정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2205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일하는 사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본 추계서는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유사사례를 토대로 산출하며, 시행 주기는 제정안에 따라 5년으로 산출
 - － 연구용역은 제정안의 시행 첫해인 2027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 * (유사사례 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
 - － (용역예산) 89.5백만원(2022년)
 - － (주요내용) 부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각계 요구를 반영하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
 - － (발주기관) 교육부
 - － (수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 (유사사례 2) 제2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 － (용역예산) 54백만원(2024년)
 - － (주요내용)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4년 단위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 －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¹⁾

1) 자료: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 (지원계획) 지원계획은 제정안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산출하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듬해인 2028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지역계획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때 용역단가는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3,300만원)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A)		72	—	—	—	—	72	14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개소수(B, 개)	—	16	16	16	16	64	13
	지원단가(C)	—	33	33	33	33	134	27
	소계 (D=B×C)	—	535	535	535	535	2,139	428
추가재정소요(E=A+D)		72	535	535	535	535	2,211	442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